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1551-356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대상청제한
민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2024.06.19.)로부터 3년간 적용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12.(금)	2026.06.22.(월)	2026.06.26.(금)	2026.06.29.(월)~ 2026.06.30.(화)	2026.07.01.(수)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park.com/gangbyeon>)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12.(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19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3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226**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어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모집공고는 모집공고일 기준 인허가(설계변경)을 반영한 주택공급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게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6.22(월)	2026.06.26(금)	2026.06.29(월) ~ 2026.06.30(화)	2026.07.01(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방문접수 [10:00 ~ 17:00, 점심시간 11:30 ~ 13:00제외]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사무실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0동 1504호(문정동, 에이치비비즈니스파크)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4.06.19.)**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 주거사업과 - 14057호(2026.06.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2-3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0~15층 4개동, 총 215세대(토지소유자 108세대, 임대 39세대 포함)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일반공급 2세대]**
 - 입주예정일 : 2026년 11월 예정(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
- ※ 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예정일을 통지할 예정이며, 본 모집공고상 공고사항과 변경되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예정일 안내는 청약 및 계약 체결전 사업주체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6930019	01	084.9811C	84C	84.9811	20.8925	105.8736	65.3878	171.2614	43.2030	2

-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상 기재 면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허가(설계변경)을 반영한 면적입니다. 주택공급면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05.31.)내용과 동일 하나,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의 소량 면적 증감이 있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별도의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분양홈페이지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세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단위: 세대,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층	동 호	아파트 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26.07.01)	입주지정일
84C	2	8층	101동 802호	693,250,900	578,769,100	1,272,020,000	127,202,000	1,144,818,000
		5층	104동 503호	676,900,900	565,119,100	1,242,020,000	124,202,000	1,117,818,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인지세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잔금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급 계약서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참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 세대 공급내역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토지등소유자	임대세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59.9222	59	59.9222	16.4123	76.3345	46.1063	122.4408	31.1492	19	5
84.9863A	84A	84.9863	21.7397	106.7260	65.3917	172.1177	43.5508	37	10
84.9997B	84B	84.9997	21.7193	106.7190	65.4021	172.1211	43.5480	12	4
84.9811C	84C	84.9811	20.8925	105.8736	65.3878	171.2614	43.2030	26	20
130.9881	130	130.9881	34.3112	165.2993	100.7875	266.0868	67.4524	14	0

※ 상기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임대 계약체결 및 관련 인허가, 관리처분계획 등 각종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임대 세대 공급내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고지의 목적으로 기재 되었으며, 금번 공급되는 주택의 대상이 아님을 안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무상옵션) 세부 내역, 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 호	유·무상	품목	내용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C	101동 802호	유상	발코니확장	발코니 확장 위치(거실+주방+침실2)	21,780,000	3,143,000	28,287,000	
			시스템에어컨	LG전자 / 공기청정TYPE(5대)	9,650,000			
	104동 503호	무상	현관 좌식형 수납장	기본형(일반 현관 신발 수납장)	-	3,494,000	31,446,000	
			유상	발코니확장	발코니 확장 위치(거실+주방+침실2)			21,780,000
				시스템에어컨	LG전자 / 공기청정TYPE(5대)			9,650,000
			쿱탑	LG전자 / BEY3GSBI	85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주방벽 / FL103 클라우드 버스트	2,000,000			
			현관벽체마감재UPGRADE	우드시트판별	660,000			
무상	현관 좌식형 수납장	기본형(일반 현관 신발 수납장)	-					

- 위 항목은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기공사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 불가)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모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우리은행	1005-904-558526	(주)한국토지신탁
유상옵션	KB국민은행	955501-00-003788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것을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사본불가)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일반공급 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3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26.(금) ~ 2026.07.05.(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문자</p>	<p>- 제공일시 : 2026.06.2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방법	서류제출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p>2026.06.29.(월) ~ 2026.06.30.(화) / 2일간 [10:00 ~ 17:00, 점심시간 11:30 ~ 13:00제외]</p>	<p>등기우편, 방문접수</p>	<p>분양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1504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p>

※ 당첨자, 예비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총전의 「건축법」(법을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5 계약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7.01.(수)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시행사, 수분양자가 각각 50%씩 계약서 작성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지연에 귀책이 있는 자가 가산세 전부를 부담합니다.(종이문서용 전자인지 분실 혹은 훼손시 납부 사실이 무효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계약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수(증빙자료 제출 필수)
	전자수입인지	○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위임용)
	위임장		○	청약자	계약장소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2024.05.31.)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로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05.31.), 주택관리번호 제2024000226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는 모집공고일 기준 인허가(설계변경)을 반영한 주택공급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게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게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시 시공사 및 사업주체에게 반드시 문의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이상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지 주·부출입구는 **헨스, 담장, 대문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하며 외부인의 통행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건축	(주)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153,610,470
전기, 소방, 통신	(주)세정이에프씨	59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 및 수탁자	시공사
상 호	(주)한국토지신탁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110111-6740008

※ 위탁자 : 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형 신탁관련 특약사항

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탁자 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신탁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사업시행형 신탁계약에 근거함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위 분양대상 물건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위탁자 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시행형 신탁사업임을 분양계약자는 인지한다.
- 본 공고상의 각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상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위탁자 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간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일부세대의 소유권이전포함) 등을 의미함)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시행자(매도인)의 지위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부담하는 제반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 조치 없이 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 우선수익자의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탁자(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 홈페이지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https://www.i-park.com/gangbyeon>)

■ 분양문의 : 1551-3560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제외)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